

공고 제 99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7일

석남3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명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웅	김*웅 1985-02-24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07(석남동)	직권말소 2025-11-27